국내여행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여행목적, 여행지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여행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및 의료실비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법률상의 제3자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을 선택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2)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3)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 분	담 보	내 용
기본	국내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후유장해지급율표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국내여행중 상해의료비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

특약	질병사망	여행도중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보상
	질병의료비	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로 보상
	배상책임	여행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휴대품손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자가 휴대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를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해 20만원한도로 보상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의료비 :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의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질병사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배상책임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휴대품손해 :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1조1점당 지급할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사형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방사능 관련 오염 등.

② 질병의료비의 경우
- 상해에 기인한 질병
- 임신, 출산, 유산
- 치아보철 등 치과치료비용

③ 배상책임손해담보의 경우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책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 휴대품손해담보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5일, 40세 남자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국내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국내여행중 상해의료비	300만원
선택계약	질병사망	5,000만원
	질병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자기부담금 1만원)	5,000만원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30만원
보험료		**2,010원**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